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1280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김가람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혁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9. 5. 21.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C과 2015. 11. 30. 혼인하였다가, 2019. 7. 10. 협의이혼(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호협1256)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경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C에게 매달 약 2,500,000원 가량을 송금하여주었고, C과 피고가 화장품 판매 사업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여 2015. 12. 2.경 C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160,000,000원을, 2018. 10. 2.경에는 C의 사업자통장으로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88. 5. 20.부터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0.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2017. 3. 9.부터 2017. 8. 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약 660,000,000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그러던 중, C은 2018. 가을경 송파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세무조사사전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C 및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세 명목으로 2019. 8. 19. C 개인통장으로 100,000,000원, 2019. 10. 24. C 사업자통장으로 10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C과 피고는 2019. 5. 21. 별지와 같은 협의이혼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한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 쌍방의 재산과 액수를 정한 다음,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하고,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실제 재산분할의 결과 배우자가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며, 적정한 재산분할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적어도 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재산분할약정을 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위 재산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 일부 청구에 해당하는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채무 및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는 모두 C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으로 주장하는 돈 중 상당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C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 기재 자체로 볼 때 피고가 C으로부터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C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H를 그대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그 사업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원고가 위 회사에 투자되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와 C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④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증여세 납부 비용은 피고가 C과 혼인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로 인한 것인 점, ⑤ 별다른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C의 아버지인 원고에 대한 채무도 C과 같이 부담한다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가혹하게 보이는 점, ⑥ 관련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4717)에서 C은 자신이 모든 채무를 부담하고 파산신청을 한 후 나중에 피고로부터 재산을 돌려받으려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와 C의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C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이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넘는 것이라거나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

협의이혼 합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 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 호 ( )

1. 과 은 2019년 5월 21일 협의 이혼한다.

2. 은 에게 2021년 5월 31일까지 회사 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보험에 대하여 적용 받도록 한다.

3. 은 에게 2021년 5월 31일까지 매월 25일 세후 1,500,000원을 지급한다.

4. 은 의 회사 의 직원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이수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양방 등의하에 제2항, 3항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5. 은 에게 2021년 5월 31일까지 거취할 곳을 책임지도록 한다. (보증금/월세 등)

6. 은 영의의 을 2019년도 안에 폐업하도록 하며, 폐업 전까지 그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행정절차를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한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 호 ( )의 매매 즉시 각각의 명의로 등록, 등기된 부채를 모두 변제한다.

8. 제7항의 부채 변제 후 차액은 이 에게 금전대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받도록 한다.

9. 향후 결혼과 이혼에 관련하여 과 및 그의 친인척 모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2019년 5월 21일

부 :
처 :